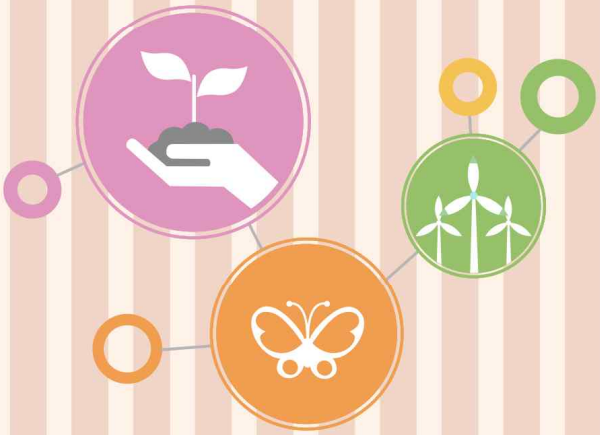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6년 10월 25일(화) 14:00~17:3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제아동인권센터 | 뿌리의 집 | 세이브더칠드런 |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엔난민기구 | 유엔인권정책센터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 재단법인 동천
피난처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안석모입니다. 아동인권의 핵심과제 중 하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리 향유를 위한 기반조차 갖지 못한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년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온 사회가 분노하던 와중에, 어느 부모가 사채업자를 피해 다니느라 10명의 자녀 중 7명은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4명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 놀라움과 의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터라 이러한 사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신고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아동학대 관련정책을 검토하면서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라도 공적 장부에 출생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비로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성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여기서부터 의료서비스 접근이나 적절한 교육의 기회 등 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고의나 태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유기 및 인신매매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부모의 출신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

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하나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7조는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정부에게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출생등록제 도입은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권고한 사항입니다.

물론 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1차적 의무는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어느정도 되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점검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비혼모의 개인정보 노출 염려로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여 아동유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와 비혼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서로 충돌하는 권리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양자의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아동의 출생 미신고 실태와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의 보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뜻깊은 성과물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하시고 그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를 비롯한 여러 발표자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차장 김경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 보장 방안 검토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입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피난처,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의 정확한 출생신고는 인권의 시작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나 교육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어린이의 약 4분의 1, 약 2억 3천만 명의 어린이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출생 등록 체계를 갖추지 못했거나 보호자가 출생 신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연령이 되기 전에 성인과 같은 노동을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소년병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로 살아갑니다.

한국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어린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어난 어린이의 90% 이상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보호자는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어린이의 출생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의 존재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되지 않은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유기·인신매매를 할 위험도 커집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이나 이주자 가정에서 어린이가 태어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난민이나 이주자 가정의 어린이는 한국의 공공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출생신고 관련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서명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도 고견을 나누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차장 **김 경 희**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프로그램

- 일 시 : 2016. 10. 25.(화) 14:00~17:30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10	등록 및 개회	**박광우**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장)
14:10~14:20 (각 5분)	인사말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경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차장)
14:20~14:40 (각 5분)	유기·학대 아동,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관련 사례발표	**권주영**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Tuelemenji Bakakenga
14:40~14:55 (15분)	〈기조강연〉 보편적 출생신고	Jane Williamson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사회 :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14:55~15:15 (20분)	〈주제발표1〉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5:15~15:35 (20분)	〈주제발표2〉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15:35~15:45 (10분)	휴식	
15:45~17:00 (각 10분)	〈지정토론〉	Neil Buckland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
		최형숙 (변화와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이준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의사)
		이아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민지 (법무부 전문위원)
		이준석 (보건복지부 사무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17:25 (25분)	종합토론	
17:25~17:30	폐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차 례

유기·학대 아동,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관련 사례발표

▶ **희원이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 3
권주영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유기, 방임, 학대 등에 노출되는 비한국적 아동 사례발표** ····· 13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 **Tuelemenji Bakakenga** ····· 19

〈기조강연〉 보편적 출생신고 ····· 23
Jane Williamson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주제발표 1〉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3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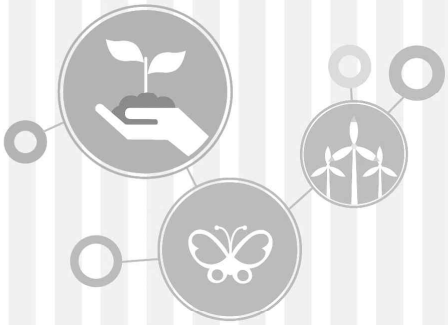
〈주제발표 2〉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 ····· 49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지정 토론

Neil Buckland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 ····· 59
최형숙 (변화와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69
이준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의사) ····· 71
이아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 ····· 73
김민지 (법무부 전문위원) ····· 75
이준석 (보건복지부 사무관) ····· 77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유기·학대 아동,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관련 사례발표

권주영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Tuelemenji Bakakenga

희원이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권주영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Ⅰ. 사례개요

2015년 5월 9일 아동이 장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방임이 의심다는 내용으로 본 기관에 신고접수 되었음.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가정에서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놀이터에서 놀던 중에 성폭력피해까지 입게 되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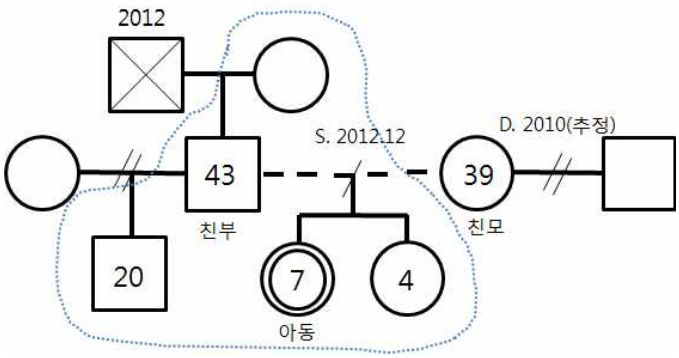
친부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 아동은 친모의 전남편과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한 아동이기에 친부가 직접 출생신고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함.

본 기관 개입이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선행 되어야 했기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상황임.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지역사회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상태이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어 학습지원, 정저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Ⅱ. 사례개입

1. 아동의 가족관계

아동인적사항	이희원/여/만7세		생년월일	2009년 9월 6일
가족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관 계
	○○○	여	-	친조모
	□□□	남	43	친부
	△△△	여	39	친모(비동거)
	미상	남	20	이복오빠
	이희원	여	7	본인
	이희주	여	4	동생
가계도				

2. 신고접수 경위

피해아동은 2015년 5월 9일 미상(10대)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있어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 신고 되었고,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됨. 이와 같은 내용이 2015년 5월 11일 본 기관에 신고 되었고, 본 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아동은 물론이고 동생 역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당시에는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던 친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의 방임으로 본 기관에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사례관리 중에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출생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고를 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서도 개입하기로 판단함.

3. 출생신고를 위한 시도

본 기관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이 필요했으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원연계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먼저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위해 시도함.

2009년 9월 6일 아동이 출생했을 당시 친모는 전남편과의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아동을 출생신고 할 경우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출생신고 않은 것으로 확인함. 친조모, 친부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해보았으나 쉽지 않았고 이에 장기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였음.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보통의 미취학아동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을 한 번도 다녀보질 못했고 초등학교입학까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었음. 친조모는 아동이 큰 병 나지 않은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 할 정도로 아동을 데리고 병원을 갈 때에는 경제적 부담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친부는 한부모로써 아동을 키우고 있어도 한부모지원 신청 할 수 없어 건강이 좋지 않은 친부는 친조모에게 의지하며 아동 둘을 키워낼 수밖에 없었음.

사실 아동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로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쳤고 가정에서만 돌봄을 받다보니 아동의 보호체계가 부족한 가운데 성폭력피해까지 입게 되었다고 보여짐.

본 기관은 개입초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은 결과 아동은 무적자인 상태임으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함. 하지만 친모가 주도하여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친모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함. 담당직원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성본창설,가족관계창설,친생자부존재소송,인지청구등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받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 기관 개입 이후 출생신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2015년 11월 19일에 시행된다는 '사랑이법'을 알게 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1]을 통해 친부의 단독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얻었음. 2015년 11월 25일 본 기관은 친부와 피해아동들 간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친부는 개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청구 자료를 준비함.

2016년 2월 1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의 소'를 청구했지만 2016년 3월 22일 기각이 되었고 기각된 사유는 친모의 이름, 주민번호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2항'을 근거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비록 결과는 기각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라는 자문을 받아 2016년 4월 12일 관할 주민센터, 2016년 4월 14일 시청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시도 함. 친부와 함께 출생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시청담당자는 친부가 친모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친모의 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더불어 알게 된 사실은 현재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기 되어있는 상태로 무적자로 확인이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됨.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아동보호명령

본 기관은 '사랑이법'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다른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2016년 4월26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함.

---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년 5월 18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1항 9호'**[2]에 대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음. 본 기관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의사표시 않은 친모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자 함.

2016년 5월 19일 시청에 재방문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전달했고 담당자는 지방법원(감독법원)에 문의하고 답변 주기로 함. 시청 담당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중 '분만에 관여한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혹시 친부 또는 친조모가 이를 증명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으나 분만에 관여를 했다는 증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추후에는 대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친조모가 출생신고 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청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희원 아동의 동생은 전남편과 이혼 한 이후 출생했음을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친부를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함.

3) 기관별 자문내용

(1) 대법원행정처(민원실) / 2016년 5월23일

Q. 본 기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받은 결정문으로 출생신고가 왜 안 되는 것인가?

A. 담당직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의무자, 적격자가 아니라고 말함.

Q. 혹시 감독법원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허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A. 담당직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해봐 야할 것 같다고 답변 함. 담당직원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9호
제47조1항(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수 있다.)
제47조1항9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을 활용하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재시도 해 보는 건 어떤지 의견을 전함.

(2) 서울가정법원/ 2016년 5월 26일

Q. (가정상황설명후)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로 받은 결정문으로는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가?

A.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통해 받은 결정문이 있지만 출생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함. 현재 상황에서는 전남편이 친생부인해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함.

Q.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청구를 할수 있는가?

A. 담당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친모에 대한 상황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사랑이법적용이 어려 울 것이라고 함. 담당직원은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함.

(3) 관할지역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과/ 2016년 5월 31일

Q. 본 기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받은 결정문으로 출생신고가 왜 안 되는 것인가?

A. 담당직원은 현재 상황에서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부가 어려움이 있다는 함.(출생신고당시 아동은 혼인외자식으로 전남편의 자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함.)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모가 친생부인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대신에 인지판결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전함.

(4) 관할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년 6월 3일

Q. (현재까지진행상황설명후)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A. 담당직원은 친모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지를 확인함. 담당직원은 친모를 대상으로 인 지청구를 소송이 필요하다는 말함.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친모의 거주지로 확 인되는 지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진행해야한다고 설명함.

담당직원은 친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한 후에 아동의 특별대리인 허가신청을 받고 인지청구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후 친생부인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함.

Q. 지방법원을 통해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현재 인지판결을 진행해도 되는가?
A. 담당직원은 인지판결은 친생추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함.

4) 이후 아동상황

본 기관은 법률자문을 통해 출생신고는 시도했으나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가운데 2016년 6월 7일 친모가 직접 기관에 연락을 함. 친모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소환장, 결정문을 우편물로 받아보면서 아동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함. 상담원은 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고 친모도 출생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친모와 약속한 당일에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최근에는 착신이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함.

최근 이사를 했다는 친모의 말에 따라 등본을 재확인하기도 했으나 주소지는 변동되지 않았음. 본 기관은 내부 회의 결과 친모를 직접 고발하기로 결정함.

현재 이희원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초등학교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음.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

Ⅲ. 총평 및 제언

- 본 기관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출생신고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한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로 보편적으로 또래아동들이 미취학시기에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을 다니지 못하고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외출을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에서만 보호가 되고 있던 중에 동네놀이터에서 미상의 학생에게 성폭력피해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 본 기관이 개입을 시작 할 수 있었지만 아동이 보통의 아동들처럼 출생신고 되어 가정 외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안전한 보호를 받았다면 성폭력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로 학교입학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 현재 친조모, 친부는 출생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이고 앞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을 것에 대해 염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상담원은 올해 아동의 생일선물로 주민등록번호를 선물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출생신고가 쉽지 않았던 과정에서 아동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동의 생일을 축하하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동의 표정은 행복해보였지만 저는 마냥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 물론 현재 아동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아동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의미를 알기 전에 하루 빨리 출생신고가 가능해져서 평범한 생활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7조를 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양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기본권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아동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의 출생신고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했고 복잡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첫 시도했던 날로부터 504일이 지난 지금까지 대

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것이 희원이에게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희원이 같이 특별한 경우 어찌보면 더 신속하고 긴급하게 국가가 보호하여야할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관련기관들이 해법에 대한 명쾌히 제시해주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함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따르는 동안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아동이었다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출생신고가 당연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본 기관 업무를 하다보면 어른들 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어렵다하더라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사회적 지원연계 및 보장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유기, 방임, 학대 등에 노출되는 비한국적 아동 사례발표[1)]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1. 외국국적의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

〈사례1[2)]〉 유학생인 아내는 혼자서 학대감당이 되지 않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나 생활비 등을 함께 벌어주면서 유학생활을 돕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사이에 유학생인 아내는 전혼관계의 딸 (당시 12세)을 초청했다. 생활과 공부로 바쁜 부모사이에서 아이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면서 영아를 돌보면서 집에서 생활하였음. 그런데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동생을 잘 돌봐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부에게 폭행을 당함.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폭행을 해서 경찰에 신고되어 우리 센터로 연계되었고, 엄마와 동생, 아동이 함께 이주여성일시보호쉼터(한울타리)로 입소함.

문제〉

1) 상담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와 방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부모를 상담했으나 어머니는 자신의 유학생활 지속을 위해 남편의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고, 자녀가 동생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함.
2) 부모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한국법의 내용을 교육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아이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아동들의 기본권이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보호체계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사례에 대한 인용은 자제해 주시고, 연구나 학술, 언론활동에서 사례 연계는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에 우리센터에 의뢰된 사례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음을 안내함.

3) 부모와 함께 귀가하지 않으려면 아동의 의사가 있어서 아동보호기관 등을 물색했으나 외국국적의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기관이 많아서 더 이상이 보호할 수 없어서 귀가조치함.

〈사례2[3]〉 외국국적의 부모가 재혼을 했는데, 아동은 현재 15세로 양부에 의해서 친족성폭력이 있어서 분리보호가 필요한데 어머니는 지적 장애가 있어서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 보호명령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외국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혹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음.

〈문제〉

1) 서울관내 아동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쉼터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고 하였음. (30개 시설과 단체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고 함)
2)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응급의료지원비로 2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 외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함.
3) 현재 부산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으나 시설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기본적 생계비나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은 후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함.

2. 출생신고 자체가 어려운 사례

〈사례3[4]〉 한국 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9년 동안 살아오면서 부부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했고, 그 사이의 자녀가 9세 남아가 있었으며 양육권을 어머니가

3) 2016년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해 보호명령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해알게된 사례임.
4) 2015년에 우리센터에서 상담을 했던 사례임. 국내법 테두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함. (현재 아동의 한국여권을 발급받고, 출국 후 본국에서 출생신고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함)

가지고 있었음. 아버지는 양육비지급에 부담을 느껴서 친생자관계부존재소를 제기하였는데 유전자검사결과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음. 하지만 자녀의 어머니는 현재 귀화가 되어 한국인 신분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는 자녀의 모가 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한국국적 취득은 무효가 되어 기본증명이 폐쇄되어버렸음. 그런데 아이는 어머니가 본국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본인은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음.

〈문제〉

1)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사람을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신분이 없어져 무국적, 출생등록자체가 소멸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버림.
2) 나라별로 귀화할 경우 원국적포기를 하고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녀의 출생신고 자체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함.

〈사례4[5]〉 한국인과 결혼을 결심하여 혼인신고는 했으나 입국심사와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1년 넘게 한국 입국이 지연되었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한 채로 한국에 입국함. 출산예정일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 한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이를 확인함. 그런 과정에서 출산 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됨. 그런데 본국의 출생등록법은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사관 답변으로 본국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문제〉

1) 출산 후부터 현재의 혼인관계에 의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산모와 영아가 방치되었음.

---

5) 과거에는 아동의 권리보호가 우선으로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는 친부모 확인여부에 상관없이 신고를 우선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친부모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생신고는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는다는 사례도 있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산모가 추위와 배고픔, 영아의 건강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누리콜센터에서 현장에 방문해보니 갓 출산한 산모와 영아가 냉방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주여성쉼터로 긴급하게 보호요청을 했으나 아이의 등록문제가 발생하여 우리센터로 연계되어 일시보호쉼터로 입소함.
3)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었던 아이는 결국 폐렴을 앓게 되었고, 서울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음.
4) 우리센터에서 혼인취소소송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이의 유전자검사결과도 인지하게 되어 결국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대사관에 문의하였으나 본국에서도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3. 친부에 의한 출생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현행법 문제

〈사례5[6]〉

한국인 남성과 동거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음. 그 사이에 4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셋째와 넷째는 아버지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해서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임. 아이들이 많은 상황인데 아버지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지정을 하려고 하지만 아이나 동거하는 아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외국인 여성은 현재 전혼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전남편의 주민번호 등 정보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남편의 가정폭력도 심해서 쉼터 생활을 반복하고 있음. *우리쉼터 2회 입소함. 타시설은 신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입소가 불가능함.

〈문제〉

1) 출생신고가 안되고 있는 셋째(5세), 넷째(3세)의 양육지원과 경제적 어려움에 계속 갈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부부의 관계도 악순환 상황임.
2) 주민센터 등 사례관리로 접근하려고 해도 출생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6) 우리센터 쉼터에 2014년, 2016년에 2회 입소했던 사례임. 출생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3) 어린이집이나 육아수당도 받을 수 없고, 의료서비스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사례6[7]〉 한국인 남성과 이혼 후에 한국인 남성과 동거하여 왔고 7년 정도가 되었음. 쌍둥이 아이를 낳았고, 시댁과의 관계도 좋지만 본국의 이혼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혼인신고가 미뤄졌고,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우리센터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인지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 절차를 진행중인데, 자녀는 5살이어서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서 힘들어 함.

〈문제〉

1) 과학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자가 입증되면 아버지의 의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시켜줄 필요가 있음. (최소 4주 이내로 약식판결 형식으로 간소화시킬 필요있음)

7) 우리센터에서 2016년 지원했던 사례임. 현재 아동은 어머니의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의 기간이 길어서 아이들이 그 동안 어떤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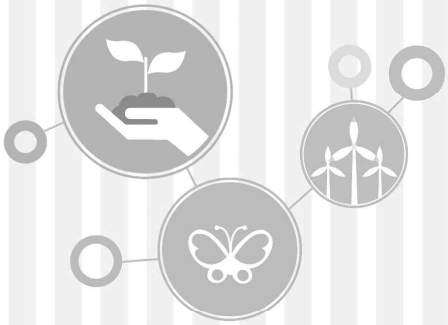
사례발표



Tuelemenji Bakakeng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기조강연〉
보편적 출생신고

Jane Williamson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보편적 출생신고



Jane Williamson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이름과 국적 그리고 법적 신분을 가지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국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7 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세프의 2013 년도 출생신고연구에 따르면 약 2 억 30 만명의 5 세이하의 어린이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계 다양한 출생신고제도의 빈 틈이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에 살고있는 가정
- 출생신고를 쉽게 하기위해 고안된 인터넷 기술에 접속할 수 없는 가정
- 다른 국가로 와서 이미 이방인이 되었으며 신분의 부재로 인해 착취에 취약한 이주민과 합법적인 출생신고제도를 따를 수 없는 그들의 자녀
- 거주국이나 이외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무국적자와 또한 그들의 자녀
- 아무런 문서도 챙기지 못한 채 피난했지만 자국에 접촉할 수 없으며 비호국의 출생신고제도에서도 배제될 수있는 난민
- 어린 미혼모의 자녀나 성적학대로 인해 태어난 아동 등 오명 속에서 태어난 아동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여러분은 불이익의 악순환이 계속이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신분과 서류를 소유한 사람들은 보호받으며 자신의 삶을 그들의 방법대로 개척해 갈 수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못해 생애의 가장 초기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조건들을 지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게 된 사람들은 계속적인 불이익을 겪게됩니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사회와 경제적 번영의 초석이 되는 교육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착취에 취약하게 됩니다.

아동인신매매는 무시무시한 국제적 산업이며 출생신고의 부재로 인해 촉진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아동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출생신고의 부재는 아동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흩날리는 낙엽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더 많은 사법권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근원을 알 권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출생신고는 이러한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입양기관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입양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물학적 근원과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정부의 관할영역안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알게 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자국내 인구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구자료입니다. 이는 출생신고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가 지니는 자국내 이주민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책임역시 모든 이주민들을 문서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가 보다 효율적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로, 외국에서 자녀가 출생했음을 증명할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되지 않은 자녀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출생신고제도의 요건들은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출생신고제도는 보편적이며 의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가난한지, 외국인인지, 이주민인지, 범죄자인지, 소수토착민족인지 혹은 무국적자인지에 관계없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출생을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출생은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하며, 자국 내 모든 출생을 신고할 효율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모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출생신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기술은 이것을 보다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통신기기 기술의 도입으로인해 이제 많은 사법권안에서 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터넷을 이용한 신속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며, 병원이나 분만실에서 신고를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신속하고 용이한 인터넷 등록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들을 포함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잊어버리거나 완료하지 못할 위험성을 줄여주고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무료이거나, 사정이 어려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요구해야 합니다. 출생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초기의 기한을 놓친 가정들이 출생신고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 출생신고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결실있는 토론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Jane Williamson (Protection Officer, UNHCR)

It is the fundamental right of a child to have a name, a nationality and a legal identity. This is set out clearly in Article 7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signed up to.

However, according to a 2013 UNICEF study on birth registration, nearly 230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had not had their birth recorded. If we look closely at who are these unregistered children, it becomes clear that the gaps in various birth registration systems around the world mainly affect the most vulnerable people. This includes:

- families living in areas so remote that they cannot access either hospitals for giving birth or the necessary government offices to obtain a birth certificate
- families who have no access to easy online technology which makes birth registration easy
- migrants who are already strangers in another land, vulnerable to exploitation due to their lack of status, and whose children cannot legally access birth registration procedures.
- Stateless persons who cannot access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here they live nor any other country and their children may be excluded.
- Refugees who flee with no documents, cannot access the documentation from their home country and may be excluded from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ir country of asylum.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Children born in situations of stigma – children of young single mothers and children conceived due to sexual assault

From these examples, you can see how the spiral of disadvantage continues. Those with firm identities and documents remain secure and can make their way in their life. Those who are handicapp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ir life by lack of access to documentation continue to be disadvantaged – unable to find their way out of poverty, unable to access the educ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for a flourishing place in the society and economy, vulnerable to exploitation of all kinds.

Trafficking in children is a monstrous global industry which is greatly facilitated by lack of birth registration – if nobody knows a child exists, how can the child be traced and protected? Lack of birth registration leaves a child blowing about like a leaf that may disappear in an instant.

Increasingly in many jurisdictions, there is a recognition that each person has the right to know his biological origin and to know, as far as possible, the identity of his or her parents.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s key to facilitating this right. We have in the audience here today a number of adoption organisations who can testify to the burning significance in the lives of many adopted people to know their origins and to have some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parents.

Birth registration is also essential for governments to know how many people are living in their territory and making appropriate plans for those persons. At the very heart of good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is reliable data on the population, which birth registration helps to provide. It is also a good practice for migration management – every government has a core responsibility to both protect and manage the migrant population in their territory and ensuring that all migrants are documented is essential to this. To be very practical about this, a migrant family with an undocumented child may find it impossibl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if they cannot obtain the relevant documents for their children born abroad.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So what are the elements of a good birth registration system?

A good birth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universal and compulsory. It must cover all births in the territory concerned, regardless of whether those births are to the poor, to foreigners, to migrants, to criminals, to indigenous persons or to stateless persons. It should be compulsory for all births to be registered and it is a core responsibility of any government to take all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all births in their territory are registered.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all. Online technology is making this ever more achievable. With inexpensive mobile technology, it is now possible for birth registration to be done quickly online in many jurisdictions, in some cases on the spot in the hospital or other facility where the child was born. Quick, easy online registration means less risk that parents, especially those of the various vulnerable profiles I mentioned above who are struggling with many other life problems, will forget or fail to complete the birth registration of thei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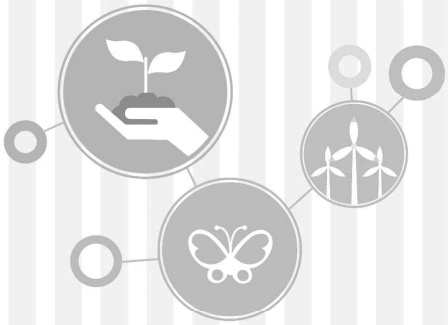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free or at least very affordable for everyone, including those with fewer resources who are the most likely to fail to register their children. Imposition of fines for failure to register a child's birth often work against the overall goal of birth registration by discouraging families from registering once the initial deadline has been passed. Incentives rather than punishments often work best to increase rates of birth registration.

I thank all of you who have made the effort to participate today to discuss this very important topic and look forward to a very fruitful discussio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주제발표 1〉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아동들

지난 4월에 학교에 가지 못한 7남매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10남매 중 일곱 아이는 아예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했고 그 중 네 아이는 태어난 지 십년이 지났는데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 충격을 주었다.[1] 비슷한 시기에 “투명인간으로 산 11세 서현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2] 친모가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전 남편이 법률상 친부로 추정되므로 출생신고가 안된다며 먼저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정리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고, 결국 아이는 11세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못했다. 최근 상담한 사례로는 미혼부가 5세 남아에 대해 ‘사랑이법’[3]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고 법원에 확인 신청했으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기각당한 사례가 있다. 앞의 사례들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법제도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아예 법제도적인 공백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한다. 바로 이주아동의 문제이다.

2016년 7월 기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총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4] 전체 인구의

1) 2016. 4. 1. 연합뉴스, 학교 못간 일곱 아이들 "가방 멘 또래가 부러웠다"
2) 2016. 7. 13. 중앙일보. “저도 진짜 이름 생겨요?...투명인간으로 산 11세 서현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2007년 100만명이었던 데에서 9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다.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동반하는 자녀 또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이주민 자녀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2015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상으로 19세 이하 총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90,72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아동 중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할 수 없는 이주아동은 위 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내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숙련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는 E-9 체류자격 소지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족 동반이 불허되고 있다. 나아가 20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단속과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 결과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공적인 신분이 없는 이주아동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2. '출생신고 될 권리'와 아동학대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을 통해 기록·관리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 및 신분사항의 발생과 변동사항이 등록·관리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시민권 및 아동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신고의 의의를 아동의 '권리' 보장의 측면보다는 국민의 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라는 행정적 편의에 더 우위를 더 두고 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만약 아동의 권리 행사와 직결된 출생신고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면,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한 공적 기관은 그 즉시 아동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서현이' 사례에서 담당 구청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결문을 요구하며 출생신고를 불수리했고, 5세 미혼부의 사례에서 법원은 '사랑이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 장짜리 기각 판결문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 결과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 서비스와 의무교육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자라고 제대로

4) 2016. 7.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에게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출생신고는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출생신고 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갖는"다고 '출생등록권'을 아동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규약을 근거로 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내외 NGO들은 정부(당사국)를 상대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하도록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구한다."라고 최종 권고했다. 이렇듯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바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출생신고 안되는 아이가 있냐며 반문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아동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어서 영유아기 아동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적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은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아동매매의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 출생신고로부터의 누락은 아동인권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한다. 출생신고가 아동에게는 권리, 부모에게는 의무인 이유이다. 지난 7월에는 네 살짜리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한 친모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했다.[5]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출생신고

5) 2016. 7. 31. SBS 뉴스. "딸 출생신고 않고 양육 뒷전 '나쁜 엄마' 집행유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관계자들은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쟁점별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

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한 공적 개입의 강화

현행 출생신고 절차에서 1차적인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거하는 친족' 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동 조문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고의나 과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태히 하는 경우, 아이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의료기관에게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출생자동등록시스템)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적 기관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는 방안(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소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지하게 한다면, 아동이 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지자체에서는 부모가 출생신고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만약 부모가 법정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 11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6] 부모에게 일임 되다시피 했던 출생신고 절차에 공적인 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찰이 어떻게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파악할 것인가이다. 결국 이 조문은 아동학대 조사가 개시되거나 여론화된 경우와 같이 표면으로 드러난 매우 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스크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조산원 등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모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법과 전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생신고 네트워크'[7]에서는 지난 19대 국회때 신경림 의원실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이 제시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출생 후 3일 이내 의사, 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자로 하여금 모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8]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현재 출산의 98.7%가 병원에서 출산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9] 이러한 정책 제언과 같은 취지에서 2014. 9. 25. 윤명희 의원이, 2015. 8. 13. 부좌현 의원이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19대 국회의 폐회로 자동 폐기되었다.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 : 2016.11.30.]

7) 출생신고네트워크: 2014년에 결성되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해 캠페인, 서명 작업, 토론회 개최, 입법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소속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연대(TRACK), 피난처)

8) 국회 여성·아동 미래 비전 자문위원회(2013), 성·아동 미래비전: 여성·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 제안, 대한민국 국회, 138쪽

9) 2014.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유혜경,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 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76쪽-77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4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등) 신설[10)]

①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성별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② 출생증명서를 송부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에 따른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최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복지라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의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는 출생증명서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⑤ 출생증명서를 송부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출생증명서의 양식, 송부,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과연 몇 명의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고 있기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전국의 일선 산부인과 병원을 번거롭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살펴본바와 같이 출생신고가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인 점을 모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단 한명의 아이라도 출생신고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제도적 공백을 눈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 2016. 2. 5. 신경림 의원 발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중

2017년 상반기부터 자녀가 태어난 병원이 직접 주민센터의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11] 총 17개 광역단체의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출생 전자 등록'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다음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등록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이다.

나.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문제점

현행법상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모'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친부가 혼인외의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57조 제1항), 인지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친모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미혼부는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더라도, 출생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미혼부는 특별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친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12]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5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모의 이름을 아는 경우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랑이법'의 적용이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13] 동일 사건의 즉시항고심 법원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

11) 조선일보. 2016. 10. 7. '출생신고, 주민센터 안가고 클릭 한 번으로', 김정환, 장현태 기자
12) 일명 '사랑이법'이라고 불림: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13)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0.자 2015호기29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우"라 함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결정했다.[14] 비슷한 시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결정과 동일하게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는 사랑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즉시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확정되었다.[15] 이러한 법원 결정에 있어서의 혼선은 근본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에 대한 법원의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다. 만약 출생신고가 아동인권 보장에 미치는 중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사랑이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 친생추정 조항과 '출생신고될 권리'의 충돌

현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는 조문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혼인 관계는 파탄 났지만 법률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가 문제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 친생추정 조문이 적용되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친부도 아닌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가 자가 부로 기재된다. 진실한 혈연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란에 생부를 기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일 년 넘는 기간 동안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우선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친부 기재를 정정할 수는 있지만, 혼외자의 출생사실을 법률상 배우자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싱글맘의 상황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친생추정 조문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2016. 11. 30.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자체장과 검사 직권에 의한 출생신고 절차에 있어서도 친생추정 조문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자녀가 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

14)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자 2015브60 결정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9.자 결정 2015호기291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즉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사례를 발견한 검사가 동 조문에 따라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녀의 생부가 아니라면, 검사가 직권으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지원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친모가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원에 "피해아동의 출생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행위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16], 출생신고 수리 관청에서 친모가 생부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 법률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친생추정 조문의 입법 취지가 조속한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자녀의 복리와 법률혼을 보호하겠다는 것에 있다면, 동 조문으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수년간 지연됨으로써 아동 복리에 현저할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된 이상, 부와 모의 특정과 무관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진실한 부모자녀관계의 확인은 추후 소송절차와 행정 절차를 통해 밝히더라도, 당장 출생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후 '즉시' 아동의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4. 미혼모의 인권과의 조화

출생자동등록제도 또는 출생통보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 지점은 미혼모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17] 출산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 출생신고를 꺼

16) 아동학대범죄에등처벌에 관한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17) 2016. 4. 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제18546호) 검토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리는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돼 결국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문제제기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2015. 6. 11. 정부 발의, 2016. 5. 19. 국회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확대되었다.[18] 개정된 법에 의하면 증명서별로 현재의 관계·신분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인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하여 해당 정보만 담긴 증명서인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반' 또는 '특정'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원칙으로 삼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 내지 신분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자녀는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다. '전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나 '혼인외'의 자녀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현출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증명원이나 '특정' 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제도의 도입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절차상 출생신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된 결과 출생기록을 남기길 꺼려하는 일부 미혼모들이 아동유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동유기가 증가했다는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익명출산제도는 보편적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익명출산제도가 도입된 해외 국가의 경우, 모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시행·확립된 곳들이다. 즉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신고 되도록 공적 개입이 강화된 상황에서 익명 출산이 논의·검토된 것이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기상황의 산모(예: 미혼모, 특히 청소년

18) 2016. 11. 30.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미혼모, 혼외 임신, 미등록 외국인, 마약·알콜 중독, 장애 등)가 임신사실을 안 때로부터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전 과정동안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 제공 등을 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신뢰출산' 서비스라고 명명하고 있기도 하다.[19]

이와 같이 해외에서 도입·시행 중인 익명출산제도는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친모에게서 출산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와 같이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논의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위기상황의 산모가 고립된 상태로 출산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산모와 아동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목표로 하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부로서 출산 기록을 제한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익명출산제도 논의는 출산 기록을 차단·제한하는 방식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위기 상황의 모든 산모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신뢰'출산제도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5. 관련 해외 입법례

대부분의 영미법 국가들이 아동의 출생 당시 관계 기관에게 일차적인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부모의 신고 이전에 의료기관에게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증명서를 지역 신분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20] 캐나다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이 병원에서 출생하면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번호가 발급된다. 출생신고 절차와 별개로 출생 즉시 아동의 신분을 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21] 호주와 뉴질랜드

19)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4(4), 318-319
20)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법학 제27호(2016)
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신고의무자 및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이 출생사실을 우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후 부모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동 이름 등 상세 사항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 호주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병원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역시 병원과 같은 출생 기관에게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부모와 아이가 출생한 병원에게 동시에 출생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병원측은 서면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시간적으로 앞선 신고를 기초로 출생은 등록된다.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이나, 두 나라의 경우 병원에서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완하여 출생신고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다.[23]

6.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신고 제도 개편

출생신고될 권리는 아동의 생존에 직결된 필수불가결의 권리이다. 기존의 행정편의적인 관점을 탈피해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신고제도를 근본부터 철저하게 개편해야 할 때이다. 1차적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모든 관계자(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기관, 법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경찰 등)는 즉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적절한 공적 지원과 연계되도록 보장해야한다.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학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아동학대 대책이기 때문이다. 신청을 받은 출생신고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만연히 불수리 처분만 해서는 안되며(구청), 사랑이법에 따른 확인신청을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법원). 만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신고의무자 및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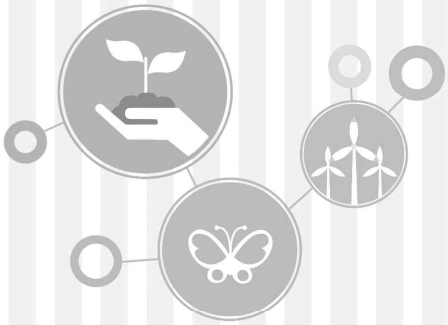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신고의무자 및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으로 2016. 11. 30.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의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기관(병원)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사랑이 법'이 입법 취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해 통일된 해석과 법적용이 필요하다.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조속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보장하자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미혼모 핑계를 대며 미루어서는 안된다. 위기상황의 산모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출산과 임신 지원 시스템을 보장하고,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위기상황의 산모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마치 미혼모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이 충돌되는 것처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은 미혼모 당사자도 아동도 아니다. 기존의 관행대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 새로운 온라인 업무 부가가 번거로운 병원, 예산 증액을 꺼리는 국회, 분야별로 단절된 복지 전달체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 아동인권에 공분을 하다가도 급하게 식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책임자이다. 아동의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면 미혼모에 대한 권리 보장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 전반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출생신고가 단순히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낡은 인식을 버리자. 출생신고는 아동의 권리 출발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주제발표 2〉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1. 들어가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또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라는 단어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생경하다. '출생신고'란 의례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뒤 이름을 정하였으면 주민센터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로 알고 있되, 그 제도의 촘촘하지 못한 구멍 사이로 빠져 나가는 아동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올해 들어 미혼모들로부터 출생신고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 6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사건, 빚을 져 도망 다니다가 자녀들을 출생신고 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건 등이 보도되어,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출생신고의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는 이러한 특이한 사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출생신고로부터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배제되는 아동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이 그러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총 수는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비례하여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현행 출생신고 제도로부터 차단되어 있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설계가 절실하다. 이하의 발제문에서는, 아동 중에서도 특히 이주 배경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 수리의 증명의 한계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이 출생하고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출생한 아동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과 출생을 통해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국민과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현재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에 해당하여, '특종신고편철장'에 편철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1] 이러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2]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성별, 거주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에 대한 (불)수리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서류 기재사항에 대한 증명도 청구할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특종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4] 수리증명서 및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원은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공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이 서류들은 각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1호다목

3) 가족관계등록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48조

4)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있어, 미등록 이주민으로서는 출생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지방 거주 이주민이 서울에 있는 대외공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거리적 제약도 있다.

어 있다'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아동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이다.[5]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이러한 수리증명서는 당사자의 출신국에서도 공적 증명력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나. 국적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의 문제점

결국 현 제도 아래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는 부모의 국적국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외공관에서 자국민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미등록 이주민은 많은 경우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가 쉽지 않다. 해당국 대사관이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출생신고 접수를 위해 어려운 조건이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6]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각 인력 송출국 대사관이 노력할 것을 압박하자, 미등록 이주민의 출생신고를 까다롭게 하거나 출생신고를 조건으로 귀국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7] 실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15개 송출국 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체류 대책을 촉구한 사례[8], 불법체류율에 따라 고용허가제 쿼터를 연동하겠다고 발표한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9]

결국 미등록 체류 이주민은 절차가 까다롭거나 거부될 수도 있는 자국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회피하게 되고, 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피해로 이어진다.[10] 난민의

---

5) 또한, 수리증명서에 기재되는 아동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국적만으로는 출생증명을 위한 충분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은 '출생의 법적 증명과 아동의 식별 기능'을 위해 아동의 출생신고 시 '본인 성명, 부모 성명, 출생일시 및 장소, 출생신고자 성명 및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Preparation of Legal Framework, United Nations (1998), 106

6) 김철효 등,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2011), 59.

7) 김철효 등, 앞의 책, 62

8) 김철효 등, 앞의 책, 62

9) 안승섭,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율 낮은 국가에 고용허가 쿼터 늘린다", 연합뉴스 (16.3.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6/0200000000AKR20160316074100004.HTML.

10) 베트남의 경우,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한국 정부에 제시한 대책 중에는 불법체류 이주민에 대한 처벌도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난민 인정자 또는 신청자는 출신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피신하였거나, 출신국 정부가 박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아 피신한 사람들이다. 출신국 정부 기관인 재외공관에 방문하는 것을 피할 수 밖에 없으며, 공관이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출신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가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3. 개정안

가. 가족관계법에 대한 이주 배경 아동 특례 조항 삽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제도 상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이주 배경 아동이 존재하며, 이들을 모두 공적 기록부에 포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이주아동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현행 가족관계등록 체계에 이주아동을 포섭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외국인의 경우 특별히 외국국적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증명서를 관공서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례조항의 신설에 따른 출생신고 정보의 전산 처리 및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규칙 등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 절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도입 추진 중인 특례조항은 아래와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부모 사이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 및 출생신고된 자는 시, 읍, 면장에게 신고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생신고의 장소, 신고 의무자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의 사항은 동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다.
고기복, "이주노동자 연좌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16.1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904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이주아동을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체계상 외국인 아동까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1)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11]이기 때문에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는 것은 국민으로 추정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가 인정 될 위험이 있다라는 취지의 반론이다.

그러나 목적조항에서 법률의 규율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외국인을 포함하는 사례는 다수 발견할 수 있으며,[12] 현행 제도에서 이미 특종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분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포섭하고 있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대상을 외국인으로 확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는 것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만 있을 뿐이고, 국적 보유를 '법률상 추정'하지는 않는다. 즉,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자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는 추정을 깰 수 있는 것이다.[13] 따라서 국적법에 따른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출생신고 및 신고의 수리가 국적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14]

나.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면제 등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통보의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

11)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의 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초등 중등 교육의 대상이 된다.

13) 대법원 2008. 9. 29.자 2006마883 결정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이하 생략)"

14)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 (2016.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은 교육, 의료공무원 등에 대해 통보의무를 일정 정도 면제하고 있으나,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 상 여전히 통보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15]

이러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는 출생신고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출생신고에 대한 접근을 막는 질곡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이 노출되고, 이러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통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출생신고의 길을

15)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아래의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형법: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행이나 감금, 협박 등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4호)임이 명백한 경우

열어 놓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통보 의무가 유지되는 한 실질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 제6항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등록정보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6], 같은 법 제117조 제1호는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이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통보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출생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주아동 또는 그 부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통보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출생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무 면제'에 그치지 않고,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의 개인정보를 출입국관리 당국에게 자의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 아동과 부모의 체류 자격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고,[17]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미등록 체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화벽의 설치가 필요하다. [18]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 제6항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16)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네덜란드의 경우, 부모 외의 제3자 (산부인과 의사) 등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에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등록 이주민 부모는 제3자를 통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 (2011), 21

18) 스페인은 지역 출생신고 처리 기관과 경찰, 이민당국 간의 정보교환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 Rights of Migrants in an Irregular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2011), 45
미국 내 여러 주/도시에서도 미등록 체류 관련 정부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경우, 범죄 및 테러 수사 등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시 공무원은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City of New York, Office of the Mayor, Executive Order No. 4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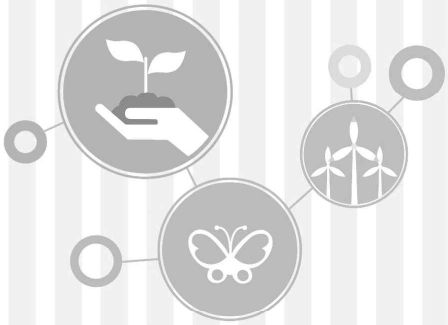
4. 결론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 논의 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판은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경우 ‘불법 체류 이주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비판은 정밀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생신고’는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고, ‘체류 자격’과도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미등록 이주민 수의 통제 등과 같은 정책적 의제와 다른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보편적 출생신고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확인하고 기본적인 국가 사회복지 보장체계에 접근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를 논의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 배경 아동에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필요성이 특히 크다. 다만 미등록 이주민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단속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출생신고가 ‘출생증명’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주아동이 이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 교육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지정 토론

Neil Buckland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

최형숙 (변화와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이준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의사)

이아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민지 (법무부 전문위원)

이준석 (보건복지부 사무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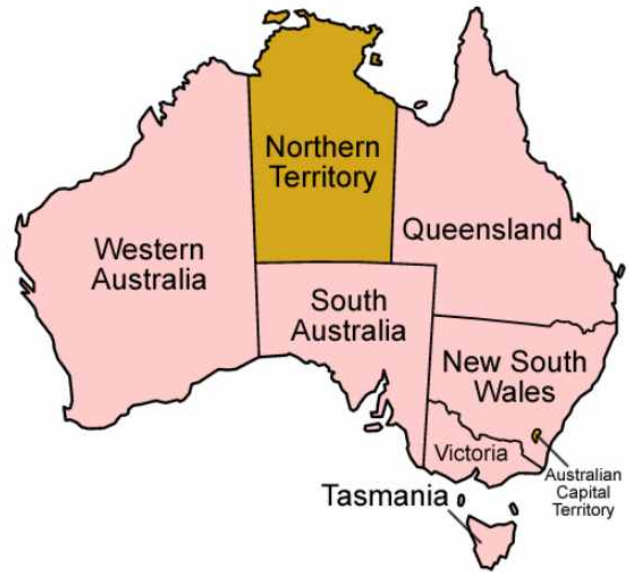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호주의 출생신고 제도

Neil Buckland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

8 개의 출생신고 제도

호주의 출생신고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와 테리토리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며, 따라서 총 여덟 개의 출생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호주의 모든 주, 테리토리 정부의 출생 통지, 신고 및 증명 관련 법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배경

호주의 모든 출생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호주 보건복지원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 년 호주 출생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 여성 인구의 97 퍼센트 (296,600 명)는 병원에서 출산
•호주 여성 인구의 2 퍼센트(6,085 명)는 조산원에서 출산
•호주 여성 인구의 0.3 퍼센트 (958 명)는 선택에 의한 가정 출산
•호주 여성 인구의 0.3 퍼센트 (984 명)는 병원으로 오는 길에 출산.

출생신고 절차

호주 출생신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며, 몇 개의 주 정부, 테리토리 정부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개괄적인 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관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출생신고는 해당 주×테리토리 정부의 출생, 사망, 결혼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병원 (혹은 조산원이나 해당 의료진)에 의해 출생 통지서가 주×테리토리 정부에 보내집니다. 그 후 해당 부모는 출생신고서를 주×테리토리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1) 출생 통지

•모든 주×테리토리에서 병원, 조산원이나 의료진 (가정 출산에 해당)은 해당 주×테리토리 정부의 출생, 사망, 결혼신고 절차에 따라 출생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생 통지 기한은 짧게는 이틀(퀸즈랜드 주)에서 길게는 두 달(서 호주)까지 다양합니다.

- 위반 시 550 불 (뉴사우스웨일즈, 캔버라)에서 2,200 불 (퀸즈랜드)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테리토리 정부에서 출생 통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 산모 명 및 주소, 아기 성별, 출생 아기 명수, 사산 여부 등입니다.

•호주 전체 단일한 출생 통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기로 출생 통지를 보고하기도 하고 일부는 전자 통지 시스템을 통하기도 합니다.

•출생 즉시 병원은 해당 지역 의회 및 주×테리토리 정부 등록 시스템에 출생 통지를 마쳐야 합니다.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모는 출생 24 시간 내 병원을 방문하여 아기의 건강을 체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 즉시 출생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 기타 절차를 통해 출생 통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출생신고

•병원, 조산원, 가정 방문 의료진은 출생 시 부모에게 해당 주×테리토리 정부의 출생신고 양식을 전달하고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모는 아이 및 부모 자신의 정보를 출생신고에 기입합니다.

- 병원은 부모를 대신해 출생신고 양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모 양측 모두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부모 한 쪽이 출생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나머지 한 쪽이 대신해 출생신고서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부모는 출생신고서를 출생, 사망, 결혼 신고소에 우편으로 혹은 직접 접수합니다.

- 모든 주×테리토리 정부에서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으로부터 60 일입니다.
- 기한 준수를 어길 시 550 불 (캔버라)에서 2,200 불 (퀸즈랜드)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출생신고 시 주×테리토리 정부에 따라 한 개에서 세 개의 부모 신분확인증을 요구합니다.

•일부 주×테리토리 정부는 (일례로 퀸즈랜드의 경우) 전자 출생신고서 시스템을 갖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추고 있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출생, 사망, 결혼 신고소는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이전에 제출된 출생 통지서를 대조합니다.
- 출생, 사망, 결혼 신고소는 60 일 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겨우 해당 부모에 서한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 주×테리토리 정부에 따라서는 보건 의료진이 아기 건강검진 시 출생신고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일부 주×테리토리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의 부모의 경우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강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출생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출생신고 비용은 없습니다만, 퀸즈랜드의 경우 60 일 기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생신고의 경우 4 불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사산아의 경우, 부모는 병원에게 출생신고 절차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대상

- 모든 호주 내 출생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주×테리토리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호주 특정 주×테리토리로 향하는 비행기나 배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 해당 주×테리토리 정부에 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민권

- 호주 내 출생이나 호주 내 출생신고만으로 호주 시민권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 호주 시민권은 다른 입법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시민권 자격획득에 대한 요구사항은 연방정부 호주 시민권법 (2007 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ustralia's Birth Registration Systems

Neil Buckland (Second Secretary, Australian Embassy Seoul)

Eight registration systems

In Australia, birth registration is a function of the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not the Commonwealth Government. So there are eight separate Australian birth registration systems. All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however, have largely consistent birth notification, registration and birth certificate legislatio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The context

Almost all births in Australia occur in hospitals.

The most recent statistics from th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showed that for all Australian births in 2013:

- 97 per cent (296,600) of women gave birth in hospitals;
- 2 per cent of women (6,085) gave birth in birthing centres;
- 0.3 per cent (958) at home (by choice); and
- 0.3 per cent (984) before arrival at hospital.

Birth registration process

I will discuss Australian birth registration systems generally, providing examples from specific State/Territory systems. *Please note this is a general outline only. Specific practices may differ across Australia.*

Births in Australia are registered with the relevant state/territory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Birth registration is a two-step process. First the hospital (or birth centre or attending medical personal) must send a birth notification to the State/Territory Government. Then the parent(s) must send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to the State/territory Government.

(1) Birth notification

- For every State/territory, it the hospital, birth centre, or person attending the birth (for home births) must notify the State/Territory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of the birth.

- The time limit for notification ranges from two working days after the birth (Queensland) to one month (Western Australia).
- The penalty for non-compliance ranges from $550 (NSW and ACT) to $2,200 (Queensland).

•For most states and territories, the birth notification information is basic information only, such as: date of birth, mother's name and address, sex of the baby, whether it was a multiple birth, and whether the child was live or stillborn.

•No universal system of birth notification exists. Some hospitals submit the birth notification information manually and some submit it electronically.

•Hospitals typically must notify several authorities of the birth at once, such as the relevant local council, and the state/territory registry.

•If a child is born in Australia outside of a hospital/birth centre without medical assistance, the parents are typically required to bring the child to a hospital for a health check within 24 hours. The hospital is then required to start the birth notification process. Other processes are available for cases where this is not possible.

(2) Birth registration

•The hospital/birth centre/attending person will give the parents a copy of the state/territory's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and inform the parents of their responsibility to register the birth.

•The parents must complete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with details about the child, parents, etc.

- Typically hospitals do not pre-fill the forms on behalf of the parents.

•Both parents must sign the form (both parents are responsible for registering the birth).

- There are typically provisions to enable one parent to register the birth if the other is unable to do so.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The parents must send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to the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or deliver it in person).
  - The time period for registering is 60 days from the date of birth for all states and territories.
  - The penalty for failing to register ranges from $550 (ACT) to $2,200 (Queensland).
- Typically parents must provide between one and three identity documents when registering the birth.
- Some states and territories (such as Queensland) have online platforms for completing and submitting electronic birth registration statements. Other states/territories do not.
- The Registry of Birth, Deaths and Marriages will cross-check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with the earlier birth notification recor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process.
- Typically the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will send a reminder letter to the parent/s of the child if the Registry has not received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within the prescribed 60 days.
- Depending on the state/territory, other health care providers will also remind parents of the need to register a child during routine health checks.
- Some states/territories provide enhanced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that assist vulnerable parents to register the birth of their child.
- There is no fee for registering a birth in Australia (except for Queensland, which imposes a fee of $4 if the registration is after the 60 day period).
- In the event of a still birth, parents may allow the hospital to complete and lodge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on their behalf. However, the parents must still sign the form.

Who can be registered?

- Typically, if a child is born in Australia, the birth must be registered in the state/territory where the birth took place (whether the parents are Australian or not).
- Typically, if a child is born on a plane or ship that is travelling to an Australian state/territory, then that child can be registered in that state/territory.

Citizenship

- Neither birth in Australia, nor the registration of a birth in Australia confers Australian citizenship.
- Australian citizenship is determined by other legislative criteria. The requirements of citizenship are set out in the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Cth)*.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동출생등록과 미혼모인권



최형숙 (변화와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많은 사람들이 자동출생등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고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0년 입양특례법 개정 활동을 하면서 미혼모 당사자로서 가장 많은 고민은 입양을 보내고자하는 미혼모들에게 출생신고가 심리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고, 입양에 연계되어있는 기관들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우려를 하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입양특례법이 시행이 되고 우려했던 부분에서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013년 서울 소재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여 임산부들을 만나고 난 후였다. 그들은 자신이 낳아서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미비한 지원제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임산부는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면 스스로 키울 것 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일어날 일들을 많은 곳에서 우려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최근 일어나는 아동관련 사건들을 접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사건들이 있 때 마다 미혼모들이 기사에 오르내린다. 마치 모든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이를 버리거나 유기를 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언론기사들이 오히려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만들고 있었다.

미혼모 단체 활동가로서 입양특례법 익면출산 자동출생등록제등을 두고 토론을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항상 생각하는 것은 왜 미혼모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어떤 정책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되거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적은 없었다. 출생신고는 출산을 한 여성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미혼모니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며, 그들인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로 몰아갔다. 그리고 미혼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회가 그들에게 법을 어기도록 하기도 했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하고 버리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기관에 맡겨졌던 과거의 입양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졌을 아이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아야한다.

최근 일어난 "대구 입양아동 뇌사사건"을 볼 때 만약 이아이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해야 할일이 출생신고이며 그것이 태어난 아이의 기본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부모의 의해서 출생신고가 늦어진다거나 하지 않게 된다면 아동의 인권의 문제이기 전에 생존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혜택 등을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자동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미혼모의 인권을 이야기 한다. 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인지 의아함이 든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제안을 수년 동안하고 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서 왜 태어난 아이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출생신고를 두고 미혼모들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왜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꺼려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 산모와 아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사회가 미혼모의 인권 침해를 걱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는 사회라면 미혼모들도 자녀를 출산하여 키울 권리와 자신의 친모와 살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살아가는 것은 미혼모의 자녀이든 아니든 다르지 않아야 한다.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 보장방안 검토 토론회



이준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의사)

출생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서 주체는 부모와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만 출생신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출생신고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향후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생등록/출생신고 업무 관련해서 의료기관에게만 과도한 인적/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아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

현행법상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이는 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영아유기, 신생아 매매,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등이 등록관서에 출생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도와 관련된 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844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418/ 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8546)도 발의되었으나, 19대 임기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아래는 신경림의원 발의안[1]을 기준으로 검토한 내용이다.

---

1)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등) ①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별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② 출생증명서를 송부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의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는 출생증명서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출생증명서의 양식, 송부,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료기관 등에 출생사실 통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혼모가 의료기관 등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 등이 등록관서에 출생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에 미혼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미혼모의 출산기록을 보유하게 되므로, 미혼모가 의료기관 등에서의 출산 자체를 기피할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 출생사실 통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증명서의 송부의무 부과, 의무위반 시 제재 여부 및 정도, 출생증명서 송부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등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출생사실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의사협회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2015. 8. 부좌현의원이 의료기관 등의 출생사실 통지의무화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에 관한 유과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출생사실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사나 조산사의 경우, 분만에 관여할 수 있는 국가공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복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출생과 관련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반면,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분만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분만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출생사실 통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 등에 출생사실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출생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 보호 및 복리를 위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미혼모의 병원에서의 출산기피 우려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송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송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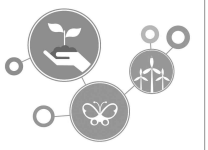
지정토론



김민지 (법무부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방안 검토



이준석 (보건복지부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에 관하여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먼저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그리고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법적 관점에서, 또한 이주아동의 관점에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소라미 변호사님과 이탁건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 출생등록이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토론회가 앞으로의 아동법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 이미 두 분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제는 이를 위해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출생 즉시 등록되지 않는 아동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둘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제 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신고의무자가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넷째, 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가. 신고의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를 만연히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독려 내지 강제하는 방법을 통해 출생등록제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라미 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더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된 경우에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조강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태료의 부과는 오히려 신고의 기피를 낳고, 아동학대 신고는 원가정 분리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손쉬운 출생신고 내지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그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출생전자등록 제도나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자동등록제도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제 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질병·장애·의사무능력 등으로 인해 타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생업에 바빠 제 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 때에는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에 의한 신고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제3자에 의한 신고를 요구하기보다는 출생자동등록제의 도입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제도를 간이화하는 것이 보다 국민을 위한 '행복입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고유의 사주론에 기초한 작명 관행으로 인해 이름을 제 때 짓지 못해 출생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이것 역시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출생자동등록제도 등의 도입은 부모의 친권 행사('작명권')를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생사실의 등록과 성명의 등록을 분리하여 추후 성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1) 신고의무자가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신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친생추정 조항 또는 일명 '사랑이'법의 불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없을 것입니다. 이 중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는 민법 제84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조만간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향후 해결이 기대됩니다만, 사랑이법의 경우와 같이 생부가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고, 생모가 비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아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출생자동등록제가 도입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불문하고 모두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문제는 이 때 출생자동등록제를 도입하면 자녀의 부모를 누구로 기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사랑이법 사안의 경우에는 생부·생모의 신원이 모두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부모로 기록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친자관계소송을 통해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친생추정 사안과 같이 생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아동과 생모만 기록하고, 개선입법을 통해 마련된 비송절차 등을 통해 생부가 확정되면 그 때 부에 관한 기록 부분을 추후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랑이법' 사안에서 생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는 본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 및 그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부모를 일부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 출생의 등록부터 원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도 이른바 '기아호적'을 통해 아동을 등록하는 기이한 편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정당한 신분관계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생부·생모의 신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는 사안, 즉, 익명출산 등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라. 반면 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를 기피함으로서 그들이 얻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낙인의 배제, 사생활의 비밀, 출입국 관리 통제로부터의 자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출생자동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출생자동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극히 온당한 방법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출생자동등록제의 구현이 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 신고의무자는 그 자동등록에 따른 불이익 내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 외에서의 비공식적 출산을 시도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유기로 이어져 결국 아동의 인권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사실이 등록되면서도 그것이 비공식적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 양측 모두의 기본권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 입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인식 하에 발표자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저의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가. 대안의 모색

2. 라.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자들께서는 신뢰출산제도의 도입,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확대 및 외국인 출생신고 특례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은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국가의 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조기에 실현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 역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이 아동의 복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미혼모의 사생활 보장 수준도 상승시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집단의 입장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서는 출생신고 제도의 구조상 어딘가에 자신과 자녀간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무제한적인 출생자동등록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완화된 형태의 출생자동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보다 적합하지 않을지요? 가령 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출생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사전에 출생자동등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자동등록을 면제하되, 가족관계등록과 무관하게 의료기관 등을 통해 파악한 아동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필요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신원이나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아동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공적 장부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함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로써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준수하는 것인지, 또는 UN 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무관하게 언제나 모든 아동에게 '가족관계등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출생통보제도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신경림의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출생통보제도'는 기존의 출생신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문제를 국가가 직접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위 제도는 신고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사실상·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의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간이한 절차이지, 최고와 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등에 의한 출생증명서 송부에 최대 30일, 출생신고 최고 후 직권에 의한 출생신고시까지 최대 3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생증명서 송부와 출생신고 최고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출생신고 유무 확인 절차에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출생 후 "즉시" 아동이 등록될 것을 요구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위 제도는 의사 등에 의한 증명서 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확인이라는 이중의 절차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고자 하는바, 출생자동등록이 되는 경우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지나치며, 관계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집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기왕에 의료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차라리 출생자동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행하는 의료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절차 또는 신고접수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중복업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출생자동등록제 대신 출생통보제도를 지지하고 계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출생통보제도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 인 쇄 | 2016년 10월
| 발 행 | 2016년 10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643 | F A X | (02) 2125-0929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 978-89-6114-505-3 93330